

##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단 운영 규정

제정 2020. 03. 20.  
1차 개정 2022. 02. 18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부설 사회협력단(이하 “사회협력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사회협력단은 본교의 사회협력사업과 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 및 관리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
**제3조(업무)** 사회협력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회협력사업 및 국책(지자체)사업의 통할
2. 사회협력사업 및 국책(지자체)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조정
3. 사회협력사업 및 국책(지자체)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·재정지원
4. 신규 사회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 수주
5. 사회협력사업 관련 업무의 기획, 추진 및 평가
6. 사회협력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
7. 사회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
8.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# 제2장 조직

**제4조(단장)** 사회협력단장은 **총장이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.** (개정 2022.02.18.)

**제5조(소속기관)** ① 사회협력단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,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), 상지대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센터, 청년지원센터,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, 원주시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(우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),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둔다.

② 각 소속기관에는 기관장을 두며, 산학협력단이 계약주체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(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,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),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, 원주시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(우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)의 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상지대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센터, 청년지원센터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계약주체가 학교법인인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6조(행정지원조직)** ① 사회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협력단 내에 운영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 또는 계약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사회협력단에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위원회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 사회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사회협력단장, 산학협력단장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(원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, 평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), 상지대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센터장, 청년지원센터장,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장, 원주시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(우산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),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사회협력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사회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사회협력단 내 각종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사회협력단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사회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 및 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5. 사회협력단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
6. 사회협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9조(소집 및 의결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사회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11조(자문위원회)** 사회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4장 회계

**제12조(회계연도)** ① 사회협력단의 회계연도는 상지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.

② 사회협력단의 수입은 교비 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**제13조(수입원)**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비 및 산학협력단의 보조금
2.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
3. 외부 찬조금
4. 기타 수입

**제14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93, 2020.03.20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20일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09, 2022.02.18)

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 시행한다.